



시 보



시보는 공문서의
효력을 갖는다.

제1735호 2026. 3. 23. (월)

고시 · 공고

○ 목포시 방재성능목표 공표

2

회람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목포시 편집 : 홍보과 ☎ 061-270-8539

목포시 방재성능목표 공표

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에 따라 「목포시 방재성능목표」를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3월 23일

목 포 시 장

1. 목 적 : 도심지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내 배수 시설이 통합 방재성능을 발휘토록 방재성능목표를 설정 공표함.
2. 근 거 :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(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·운용)
3. 방재성능목표

지 역 명	강우지속기간			비 고
	1시간	2시간	3시간	
목 포 시	77mm	111mm	132mm	

4. 방재성능목표 적용(운용) 대상

- 근거법령 :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16조의5(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평가)
- 대상지역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(주거지역, 상업지역, 공업지역, 녹지지역)

○ 대상시설 :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시행령 제14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
도시지역에 설치된 방재시설

- 「소하천정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
시설 중 우수지
- 「하수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
-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방재성능 평가 대상시설(행정안전부 고시)
 - 「소하천정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 부속물 중 배수 펌프장
 - 「하수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저류시설과 그 밖의
공작물·시설 중 빗물펌프장
 - 「도로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시설 중 배수로 및 길도랑
 -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
 - 「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지침」에 따른 고지 배수로

5. 방재성능목표 적용(운용)

- 도시지역 내 택지개발 등 새로운 도시기반 계획수립 시 적용
- 하수관거, 저류지, 펌프장 등 도시지역 내 배수시설 전반에 대한 방재
성능 평가 시 적용
- 방재성능 평가 후 방재성능목표 달성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시 적용
- 방재성능목표를 적용하여 홍수유출량 산정
 - 홍수유출량 산정은 합리식, RRL 모형, ILLUDAS 모형, SWMM 모형을
활용하고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용

6. 방재성능목표 적용일 : 공고일부터